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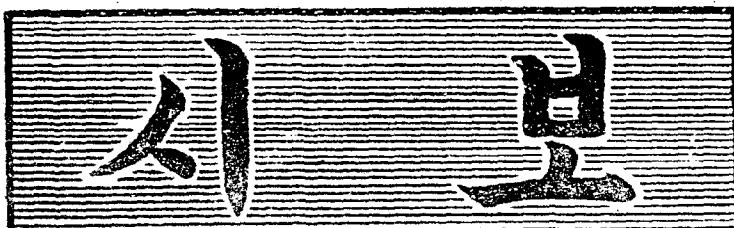
제 253 호

1972. 7. 1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공보실 장 손 왈수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차

례

이정우보

◎ 규칙

제 1231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증개정규칙 3

제 1232 호 서울특별시직제증개정규칙 4

◎ 충령

제 358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증개정규정 6

◎ 공고

제 161 호 72년도 제2차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집행요령 6

◎ 사령

..... 8

서울특별시 시민과 함께하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005

337

규 칙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1972년 7월 8일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31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제 2 호중 "소년계"를 삭제하고 "교통계"를 신설하며 제 3 호 및 제 6 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 4 호를 제 3 호로, 제 5 호를 제 4 호로, 제 7 호를 제 5 호로, 제 4 호중 "조사계"를 삭제하고 "형사계"를 신설한다.

제 3 조 중 체장은 "경위 또는 경사"를 "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별표 1 경찰서 파, 계, 분장사무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파별란 "경무" 계별란 "경리" 분장사무표중 "20" 다음에 "21, 22, 2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21"를 "24"로 한다.

21. 경찰차량에 관한 사항

22. 운전원 교양 감독에 관한 사항

23. 경찰차량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파별란 "보안" 계별란 "보안" 분장사무란의 "11, 14, 15, 18, 20, 21"을 각각 삭제하고 "12"를 "11"로,

"13"을 "12"로, "16"을 "13"으로
"17"을 "14"로, "14" 다음에 "15" 즉심사범과의자의 유치호송 및 "지문
체취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22"
를 "16"으로 "19"를 "17"로,
"23"을 "18"로 하며 파별란 "보
안" 계별란 "소년"을 삭제하고 계
별란 "소년"의 분장사무란의 "1 대
자 7"을 파별란 "보안" 계별란
"보안"의 분장사무란중 "18" 다음
에 "19" 대자 25로 신설하며, 파
별란 "보안" 계별란 "외근" 분장
사무란중 "9"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0. 호구조사업무

11. 방범업무 계획 및 지도

12. 각종 안전사고 및 위해예방 (풍수
설해는 제외)과 조치

13.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위험축대에
관한 사항

14. 수상경찰에 관한 업무

파별란의 "교통"을 삭제하고, 파별란
"보안" 계별란 "외근" 다음에 "교
통"을 신설하며, 파별란 "교통" 계
별란 "교통" 분장사무란의 "1 대자
9"를 파별 "보안" 계별 "교통"
분장사무란 "1 대자 9"로 하며, 파
별란 "경비" 계별란 "작전경비" 분
장사무란중 "11, 13, 14, 16"을 각각 삭제하고 "12"를 "11"로, "15"를 "12"로,
"17"를 "13"으로 "18"을 "14"로,
"19"를 "15"로, "20"을 "16"으로

"21" 을 "17" 로 하며, 과별란 "경비" 계별란 "방위" 분장사무란 중 "15" 다음에 "16.17" 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6. 풍수설해의 경찰대책에 관한 사항 17. 화재에 대한 경찰대책에 관한 사항 과별란 "수사" 계별란 "수사" 분장 사무란 중 "10,11,12,13" 을 각각 삭제 하고 과별란 "수사" 계별란 "조사" 를 삭제하며, 계별란 "조사"의 분장 사무란 "1 내지 4" 를 과별란 "수사" 계별란 "수사" 분장사무란 "9" 다음에 "10 내지 13" 으로 "13" 다음에 "14." 수법공조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하고 "14" 를 "15" 로 하며, 과별란 "형사" 계별란 "형사1" "형사2" "형사3" "형사4" 분장사무란 형사1의 "1 내지 7", 형사2의 "1 내지 3", 형사3의 "1 내지 3", 형사4의 "1 내지 6" 을 각각 삭제하고 과별 "수사" 계별 "수사" 다음에 "형사" 를 신설하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범죄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2. 특명사건(사항) 특별수법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3. 횡령, 배임, 독직사건 수사 및 검거 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법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5. 통화 공체 위조사법 수사 및 검거 에 관한 사항 6. 강력범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7. 폭력범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8. 도법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9.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조지도범에 관한사항은 330 수사대에서 수사 및 검거 10. 치기배사법 장물사법 수사 및 검거 에 관한 사항 11. 마약사법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12. 금융경제사법 동향파악 및 수사자 료 수집에 관한 사항 13. 회사 비법화사법(특외품포함) 및 은행사법 수사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과별 "정보" 계별 "정보3" 분장 사무란 중 "7"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남북적십자회담에 따른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7월 8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32호

서울특별시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65조 내지 제 78조 각항중 "담당"
을 "제장"으로 각호중 "담당"을
"제"로 각각 한다.

제 64조제 1항중 "소방파"를 삭제하고

제 2 항 중 "소방과장은 소방총경으로" 를 삭제한다.

제 65 조 제 1 항 중 "경정"을 "경정 또는 경감"으로 한다.

제 66 조 제 2 항 제 1 호 보안계의 사무중 "나, 라, 사, 자, 차"를 각각 삭제하고 "다"를 "나"로 "마"를 "다"로 "바"를 "라"로 "아"를 "마"로 "카"를 "바"로 "타"를 "차"로 하고 "사, 야, 자"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사. 사행 행위 윤락 행위 광고물 지도단 속 및 사회 풍기 정화

아. 총포, 화약류 혀가 및 단속지도
자. 즉결 심판에 관한 사항

제 2 항 제 2 호 외근계 사무중 "라"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마. 호수 조사업무

바. 방범계획 및 지도

사. 각종 안전사고 및 위해 예방(풍수
설해는 제외)과 조치

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자. 수난 구조

차. 유선 사업

카. 방범 순찰대 운영

제 2 항 제 3 호 소년계 사무중 "사"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아. 여자 경찰관 지도

자. 풍속업소 및 유해환경 단속지도

제 67 조 제 1 항 중 "고속도로 순찰대" 및

제 2 항 제 5 호 "고속도로 순찰대"를 각각 삭제한다.

제 68 조 제 2 항 제 2 호 중 "아" 이하를 삭제한다.

제 69 조 제 1 항 중 "동원계"를 "민방공계"로 제 2 항 제 1 호 방위계 사무중 "나, 마, 바, 사, 아"를 삭제하고 "다"를 "나"로 "라"를 "다"로 하고 "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라. 예비군 동원운영 및 복무규율

마. 예비군 무기탄약 및 장비 관리 유지

바. 예비군 원호 및 보급 지원

사. 방위소집자 운영 관리

아. 파내 직원 복무 및 인사

제 2 항 제 2 호 중 "동원계"를 "민방공계"로 하며 민방공계 사무중 "가, 나, 다, 라, 바"를 각각 삭제하고 "가, 나, 다, 라, 바"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민방공 계획 및 조정

나. 민방공 교육훈련

다. 민방공 시설 관리 유지

라. 풍수설 해의 경찰 대책

바. 화재에 대한 경찰 대책

제 70 조 제 2 항 "차" 다음에 "카. 민방공 경보기 관리 유지"를 신설한다.

제 71 조를 삭제한다.

제 72 조 제 2 항 제 1 호 수사계 사무중 "바" 다음에 "사. 특명사행수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를 "아"로 한다.

제 74 조 제 2 항 제 3 호 "사" 다음에

"아. 남북적십자회담 자료조사"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령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58 호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전 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2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

전결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제4조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별표란의 "담당"을 "계장"으로 주관별란 "소방과" "소관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1 호

72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집행 요령

72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72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시책별: 수출특화산업육성자금지원

2. 재원: 72년도 배정액

45,900 천원

3. 지원 내용

가. 자금구분 시설자금

나. 지원한도 10,000 천원 이내

다. 융자기간 1년거치 4년상환

라. 금리 년 12%

4. 지원대상

상공부 고시 제 8263 호 (72.1.21)

로 상공부 장관이 지정한 별표 업종 및 품목 생산업체로서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가입을 펼하고

나. 71년도 수출실적이 있고

다. 72년도에도 계속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할 수 있음을 증명서류상으로 입증하는 업체

5. 신청절차

가. 신청서류: 소정서식의 신청서

(신청공업과 배부)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나. 신청할 곳: 공장소재지구청(산업과, 영등포구는 상공과)

구청장이 시장(공업과)에게 전달

다. 신청기간: 72.7.10 - 7.22
(13일간)

6.. 지원대상 결정

서 울 특별시 재정 자금 융자 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

상을 결정하여 상공부장관 및 중소
기업은행장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출.

“별 표”

수출특화 산업 육성 자금 융자 대상 업종 및 품목

업 종	품 목	비 고
생 사	생 사	
인 삼 및 인 삼 가공 품	인 삼 주	
견 직 물	견 직 물	
저 마 제 품	남방샤쓰, 카텐카바류, 와이샤쓰, 쉐타, 저마제품 에 한함. 와이류 저마지	저마제품에 한함
벽 지 류	벽 지	
도자기 및 타일	가정용 도자기 제품(꽃병, 대접, 접시 등)	
공 예 품 (신변세화 포함)	면조화, 지조화, 진주, 인조진주, 진주모찌, 갑 각귀석 및 귀금속제품, 유리가공제품, 석가공제품, 신변용인조세화류, 프라스틱 및 인조진주제, 각 종부로치류, 의장식제품, 완륜, 시계, 밴드, 뱃지 류 및 메달류, 박클류, 스테키류, 빛 및 머리장식 식구류 죽세품, 목제품, 프라스틱류제품, 완죽제 품, 단추류, 핸드백류, 진유공예제품, 나전칠기, 고물모피제품, 흡연용구류	

사	령
---	---

(◎) 1972. 6. 29.

위생시험소 소장	지방보건연구관	박재주
위생연구소 소장에	보함	
위생시험소 식품화학과장	지방보건연구관	박성배
위생연구소 약품화학과장에	보함	
위생시험소 세균혈청과장	지방보건연구관	신정태
위생연구소 식품화학과장에	보함	
위생시험소 공해검사과장	지방보건연구관	김효상
위생연구소 첨가불과장에	보함	
위생시험소 약품검정과장	지방보건연구관	오영근
위생연구소 수질공해과장에	보함	
위생시험소 위생화학과장	지방보건연구관	김학영
위생연구소 세균과장에	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김종석
위생연구소 대기공해과장에	보함	
직무대리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이덕행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원재은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송한호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윤원용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사보	남병찬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사보	장재홍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사보	노홍식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사보	이정자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사보	김을상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사보	임봉택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사보	신재영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원	박춘봉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원	임순자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원	김석치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원	박두희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원	이봉자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근무를	지방보건연구원	우준재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이 강 문	위생시험소	고 용 원	이 현 주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노 종 식	④ 1972. 7. 7.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설국 영 선 과 장)	건축기정 유 병 화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신 경 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대 통령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김 철 중	동 대 문 구	지방건축기좌 허 각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박 귀 영	성 동 구	지방건축기좌 유 명 하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이 인 세	성 북 구	지방건축기좌 유 태 헌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오 수 경	마 포 구	지방건축기좌 한 기 설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김 민 영	영 등 품 구	지방건축기좌 이 주 호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서 정 효	수도국시설과 공원용수계장	지방토목기좌 김 태 백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오 일 환	수도국급수과 급수장치계장	지방토목기좌 박 제 문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김 용 재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김 규 현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김 동희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문 정 배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김 수 선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곽 복 일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0-10 · 제 253 호

시

보

1972.7.10.

종로구 보건소	지방행정서기보 윤갑영	종 구 지방행정사무관 김향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동구 보건소	지방행정주사 이규한	종로구 보건소 지방수의사 김세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북구 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소장) 조정열	경북대구시 지방행정서기 이재웅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사무관 전원호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호봉을 급함
성북구	지방행정사무관 박준환	종구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